

농촌진흥청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30.] [농촌진흥청훈령 제1327호, 2022. 3. 30.,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4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초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은 차장 밑에 두며, 코로나19대응영농지원에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붙이지 않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제29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 발생 현황 파악 및 영농현장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대응 관련 동향·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현장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5. 그 밖에 필요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촌진흥청의 4급·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반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검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년 8개월이 되는 시점(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27호,2022.3.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